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5
----------	-----

제출년월일: 2000년 3월 2일

제출자: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공직사회의 활성화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혈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안 제24조 제2항)
- 나.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경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 다. 남계(男系)와 여계친족간(女系親族間)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 (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 '99.12.7, 대통령령 제16,610호)
- (2)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서울인사12100-107(2000.1.1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제41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마. 기타 : 인사12100-107(2000.1.13)호에 의거 사전 승인완료(공포예정보고생략)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다.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 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본인	7
결 혼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사 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탈 상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생 략)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의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
④~⑤ (생 략)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 재직기간중에 ---

⑦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 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생략)

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경우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